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안내 자료

<2024. 4. 감사관>

※ 봄철 사적모임 증가에 따른 긴장 이완과 음주운전 증가  
2023년 동시기 대비 50% 적발 증가  
“ 음주운전은 인생의 불명예스러운 마감 ”

## 【 관련 법률 】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부터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음주측정불응(도주)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실행 신고

☞ 광주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고단498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혈중알코올 농도 0.134%, 징역 10월(법정구속)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주 요 사 례 】**

※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목격자의 실시간 신고 활성화(스마트폰, 112신고 어플 등)로 거주지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현장 단속 적발 사례 다수 발생

-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5km 구간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적발(2회차 음주운전 적발) (실형선고: 징역1년), (당연퇴직)
-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전복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명의 상해를 가함 (운전원 면허취소), (당연퇴직)
-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현장에서 음주운전 적발 (중징계: 해임)
-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 A를 들이받고 피해차량 B, C를 차례로 충격하여 피해자 3명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적발 (중징계: 해임)
-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운전 적발 (중징계: 정직1월)
-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우측 화단 안에 설치된 표지판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위로 반복 충격하여 약 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적발 (중징계: 정직1월)
-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아침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 중 접촉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측정(혈중알코올농도 0.064%) 후 음주운전 적발 (경징계: 감봉1월)
-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이탈하여 가로등을 충격하고 사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 (중징계: 정직1월)

## 【 인사상 불이익 】

- 교원
  -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장 및 교감 임용에서 영구 배제
-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음주운전 등)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 불가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급지 또는 전보희망자가 없는 지역으로 전보
  - 근무성적평정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양" 이하로 평정

## □ 행정사항

- 각급 기관장(학교장)은 2024년 음주운전 수시 예방교육을 2024. 7. 31. (수)까지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점검 시 교육실시 여부확인 예정)
  - ※ 대상기관: 도교육청 각 부서,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직속기관, 각급학교
- 취약시기(연휴, 휴가기간 등)에 소속 교직원에게 음주운전예방 SMS 문자 메시지를 2회 이상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구 분	문자발송일	문자내용	발송대상
어린이날 (대체휴일)	5.3 ~ 5.6	[붙임 1] 참고	전교직원
여름방학	7.24 ~ 8.25		
추석명절	9.16 ~ 18		
연말연시	12.24 ~ 31		
주말	금~일		

※ 문자 발송일 등은 자율지정하되 2회 이상 발송

- 붙임 1. 음주운전 예방 SMS 문자메시지 발송 문구(예시)  
2. 음주운전 예방 교육 자료(동영상)  
3. 음주운전 관련 징계법령 등

## 붙임 1

### 음주운전 예방 SMS 문자메시지 발송 문구(예시)

- <전북혜화학교 음주운전예방안내>  
음주운전! 한 잔의 술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전북혜화학교 음주운전예방안내>  
당신이 기울인 술잔 한잔, 가족의 눈물 한잔이 됩니다.
- <전북혜화학교 음주운전예방안내>  
음주운전, 타인의 가족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 <전북혜화학교 음주운전예방안내>  
오늘의 한 잔, 범죄자가 되시겠습니까? 공직자로 남으시겠습니까?
- <전북혜화학교 음주운전예방안내>  
음주운전, 당신의 공든 탑을 무너뜨립니다.

## 붙임 2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자료(동영상)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공익광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W0E1HIGkz4> (5분 분량)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과 함께하는 음주운전 사례. 공익광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KUYnuoB7ok> (7분 분량)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막을 수 있다. 공익광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b\\_pS8yoZPA](https://www.youtube.com/watch?v=Ab_pS8yoZPA) (5분 분량)
- [도로교통공단, 알코올이 인체 및 운전 미치는 영향. 공익광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lssE19ITmg> (6분 분량)
- [교통안전TV, 한 잔도 안돼요, 공익광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HsjfG9uVfg> (2분 분량)

※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 맥주 1잔을 마시고 30분 후에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0.05%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2022.6.17.시행>**

**【별표 5】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4. 음주 횡수산정 기준일 - 국가공무원: 2011. 12. 1. - 지방공무원: 2012. 4. 24.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사망사고의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운전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23.10.12.시행>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023.1.3.시행>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정직~감봉 강등~정직 해임~정직 해임~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파면~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나. 사망사고의 경우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해임~정직 파면~해임 해임~정직 파면~해임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 중징계	파면~해임 해임~정직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